

(부의안전내역 및 요약서-참조2)

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전 내역

연 번	안 건 명	소 관 부 서	소 관 위원회
1	○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정책기획과	자치행정위원회
2	○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"	"
3	○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"	"
4	○ 성남시 인터넷무역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	기업지원과	경제환경위원회
5	○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	청소시설과	"
6	○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	하수관리과	"
7	○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	문화예술과	사회복지위원회
8	○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	"	"
9	○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	"	"
10	○ 성남시 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	체육청소년과	"
11	○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도시계획과	도시건설위원회
12	○ 음촌로(상대원고개~대원사거리 구간)도로 확장에 관한 청원(채창석 등 1,380명, 소개의원 : 지관근)	도시개발과 (도 로 과)	"
13	○ 2007회계년도 세입·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	의회사무국	본 회 의
14	○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	체육청소년과	"

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 관 위원회
1	성남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□ 제안이유 ○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○ 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 제고와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기능에 맞게 일부 부서 기능 재조정에 따른 행정기구와 분장사무의 대강을 명시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 □ 주요골자 ○ 국(局)단위 조정내역 [변동없음 : 현행유지] ○ 과(課)단위 조정내역 [증감없음] ▪ 명칭변경 : 2과 - 지역경제과 → 생활경제과 - 기업지원과 → 지식산업과 ○ 팀단위 조정내역 ▪ 신 설 : 11팀 - 행정지원 (총무과) - 기업SOS (지식산업과) - 노령요양 (노인장애인과) - 주차장관리 (교통기획과) - 공원운영2 (공 원 과) - 주차과징 (3팀 - 구 경제교통과) - 문화체육 (3팀 - 구 경제교통과) ▪ 폐 지 : 11팀 - 행정혁신 (총무과) - 균형발전 (지역경제과)	정책기획과	자치행정 위 원 회

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 관 위원회
		- 기초노령연금 (노인장애인과) - 차량관리 (교통기획과) - 기업회계 (수도행정과) - 문화관광(3팀 - 구 경제교통과) - 체육청소년(3팀 - 구 경제교통과) ▪ 명칭변경 : 9팀 - 자치행정과 : 여론 → 혁신여론 - 지식산업과 : 기업지원 → 산업진흥 - 지식산업과 : 지식산업 → 첨단산업 - 청소행정과 : 폐기물관리 → 재활용 - 청소시설과 : 재활용정책 → 시설행정 - 청소시설과 : 청소시설 → 시설관리 - 교통기획과 : 주차계획 → 주차시설 - 하수관리과 : 오폐수관리 → 오수관리 - 공 원 과 : 공원운영 → 공원운영1 ▪ 소속변경 : 3팀 - 노 사 협 력 : 지역경제과 → 지식산업과 - 에너지관리 : 기업지원과 → 생활경제과 - 가 스 안 전 : 기업지원과 → 생활경제과		
2	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	□ 제안이유 ○ 기능쇠퇴·업무량 감소 부서의 기구(팀) 축소·통합·폐지 및 관련법규의 제정(질서 위반행위규제법-’08.6.22시행, 장기요양보장법-’08.7.1시행)과 시설관리공단업무의 시 직영 이관 등으로 업무량 증가 부서의 정원을 보강 재조정하고	정책기획과	자치행정 위 원 회

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 관 위원회
3	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○ 한시정원(행정혁신·균형발전)으로 운영중인 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 후 재배치하여 ○ 사회복지, 기업지원, 공원, 환경, 교통분야 등의 보강으로 현장행정 업무 중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 □ 주요골자 ○ 정원의 총수(안 제2조) • 총 정원 : 2,515명(변동없음) - 집행기관의 정원 : 2,480명(변동없음) - 의회사무국의 정원 : 35명(변동없음) ○ 직급별 정원조정(안 제3조) • 일반직 정원조정 : 1,994명(변동없음) • 기능직 정원조정 : 501명(변동없음) • 정무·연구·지도·별정직 : 20명(변동없음) □ 제안이유 ○ 담배소매인 등록 및 취소, 행정처분 등 담배 소매업과 관련된 제반업무의 소관이 중앙부처(재경부)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변경되어 우리시의 고유사무로 됨에 따라 ○ 현재 상급기관 수임사무로써 성남시사무위임규칙에 의해 각 구청으로 재위임 되어 있는 담배소매업 업무를 성남시사무위임조례로 변경 위임하고 이와 함께 과태료, 벌칙(고발) 등의 처분조항 등을 추가 위임코자 하며	정책기획과	자치행정 위원회

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 관 위원회
4	성남시 인터넷 무역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	○ 아울러 행정수요에 맞는 기구 및 정원운용을 위한 기구개편으로 과 명칭변경 등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□ 주요골자 ○ 담배소매인 등록 및 취소, 행정처분 등 담배 소매업과 관련된 제반업무 소관 변경(중앙부처 <재경부> → 기초자치단체 <우리시 고유사무>)에 따라 성남시 사무위임규칙으로 각 구청에 재위임 되었던 담배소매업 업무를 성남시 사무 위임조례로 변경 위임 ○ 부서 명칭변경 • 지역경제과 → 생활경제과 ○ 단위사무 부서조정 • 고압가스사용신고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 등 업무 : 기업지원과(가스안전팀) → 생활경제과(가스안전팀) □ 제안이유 ○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 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본 조례가 (재)성남 산업진흥재단의 설립과 성남벤처넷 운영으로 업무가 중복되어 별도의 성남시인터넷 무역 지원센터 설치,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폐지함 □ 주요골자 ○ “동 조례 폐지”	기업지원과	경제환경 위 원 회

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 관 위 원 회
5	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	□ 제안이유 ○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을 민간위탁하여 정년퇴직으로 부족한 가로환경미화원 충원 및 재정건전화에 기여코자 함 □ 주요골자 가. 위탁시설 개요 ○ 시 설 명 :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○ 위 치 :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004번지 ○ 면 적 : 53,979m² ○ 시설물 내역 · 사무실 및 작업장 : 4,150m²(금회 위탁대상) · 음식물자원화시설 : 1,987m² · 청소차고지 : 31,406m² · 기동대적환장 : 1,950m² · 기타(도로, 주차장, 세차장등) : 14,486m² ○ 소요예산 : 900백만원 나. 위탁방법 : 공개모집(법인) 다. 위탁관리의 필요성 ○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으로 부족한 가로청소 미화원 충원 ○ 인원 감축으로 재정건전화에 기여	청소시설과	경제환경 위 원 회

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 관 위 원 회
6	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	□ 제안이유 ○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근거법령의 변경 ○ 가축의 범위에 “개”가 추가됨으로 제한 대상 및 방법의 개선이 대두되고 ○ 판교 및 도촌지구 개발 등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□ 주요골자 가. 근거법령의 변경 - “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”에서 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”로 변경(안제1조) 나. 가축의 범위 변경 - 가축의 범위에 “개” 추가 다. 제한 지역의 변경 - 제한지역에서의 예외규정을 둠(안제3조제1항) - “구역(동)별”로 제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“용도지역”으로 제한 지역 변경(안제3조제2항)	하수관리과	경제환경 위 원 회

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 관 위원회
7	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	□ 제안이유 ○ 그동안 성남시가 시민화합과 여가문화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제를 추진하여 왔으나 단위 행사별 1회성 추진구성 운영함으로써 성남시 각 축제의 질적·양적 향상을 이루지 못하므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축제 행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 □ 주요골자 가. “축제”라 함은 문화적, 예술적,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행사를 말함(안 제2조) 나. 축제위원회는 각종 축제의 내용 및 개최 수, 개최시기 등 조정·발전에 관한 사항, 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등을 심의하도록 함(안제 3조) 다. 위원회는 축제 관련기관, 단체 임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15인 이내 위원을 두도록 함(안제 4조) 라.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도록 함.(안제 7조) 마. 각 축제의 추진 주체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축제 종료 후 개최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는 현지조사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평가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(안제 10조)]	문화예술과	사회복지 위원회

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 관 위원회
8	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	□ 제안이유 ○ 우리시를 대표하는 4개 여성합창단에 대한 지원이 시 및 각 구별로 상이하고 지원에도 차등이 있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합창단에 대해 조례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민간예술단체가 더욱 활성화되어 향기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함 □ 주요골자 ○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시 및 수정구·중원구 분당구에서 운영중인 여성합창단에 한한다.(안제2조) ○ 지휘자·반주자를 제외한 일반단원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합창에 재능이 있는 자로 한다 (안제6조) ○ 여성합창단의 일반단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(안제8조제1항) ○ 시장은 여성합창단의 원활한 활동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(안8조제2항)	문화예술과	사회복지 위원회
9	성남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	□ 제안이유 ○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근거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의 전부개정(2007. 9. 10 개정) □ 주요골자 ○ 문화시설을 설치 권장 건축물 대상 종류 증가(안 제 2조) ○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(안 제 6조) ○ 미술위원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심의 내용 변경(안 제 8조)	문화예술과	사회복지 위원회

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 관 위원회
10	성남시 체육진흥 기금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	□ 제안이유 ○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기준(행정안전부)에 의거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○ 체육진흥기금 운영에 있어서 『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』에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「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」에서 기금 운영에 관한사항을 심의 운영하여 ○ 이에 대한 「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」 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함. □ 주요골자 ○ 「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」의 설치 및 구성(안 제4조) •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마련 ○ 「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」 기능(안 제5조) •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○ 「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」 위원장의 직무(안 제6조) • 위원장의 직무 명시 ○ 「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」 간사 및 서기(안 제7조) •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및 서기 직무 명시 ○ 기금의 사용등 일부 개정(안 제8조) • 「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」를 「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」로 개정	체 육 청소년과	사회복지 위원회

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 관 위원회
11	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☐ 제안이유 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) 제1항 제13호 준공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로 되어 있으나 ○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)은 준공업 지역에서의 용적률은 400 퍼센트 [기존 공동주택(주거복합건축물 포함)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250퍼센트] 로 제한 규정하고 있어, ○ 준 공업지역 내에서의 용적률을 400퍼센트 [기존공동주택(주거복합 건축물을 포함) 재건축 하는 경우에도 400퍼센트] 로 하고자 함. ☐ 주요골자 ○ 준 공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을 400퍼센트로 함 (안 제67조 제1항 제13호)	도시계획과	도시건설 위 원 회
12	음촌로(상대원고개~ 대원사거리 구간) 도로확장에 관한 청원	☐ 청 원 인 : 채창석 등 1,380명 ☐ 소개의원 : 지관근 의원	도시개발과 (도 로 과)	도시건설 위 원 회

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 관 위원회
13	2007회계년도 세입·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	□ 주요내용 ○ 중동 3구역 주택 재개발 순환정비 관련 음촌로 구간 중 단대오거리에서 중동 3구역에 이르는 도로를 10m 확장하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 예정되어 있는바 교통량의 증가로 시민불편 초래 ○ 기존 2,3공단은 물류 및 생산기지로 많은 교통량 유입으로 인해 도로(상대원고개~대원사거리) 확장이 절실히 요구 되어지는 곳이며, 상대원 2구역 주택 재개발과 관계된 곳으로서 하루 속히 도로 확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□ 근거법규 ○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□ 인 원 ○ 5명(의원 1, 일반인 4명) □ 선 임 안 ○ 안계일 : 시의원 ○ 전중열 : 서울산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○ 주현기 : 신구대학 세무회계학과 교수 ○ 최병주 : 세무사 ○ 민재기 : 성남시 고문 공인회계사	의회사무국	본 회 의

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 관 위원회										
14	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	□ 제안이유 ○ 2008. 2. 1일자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 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 설립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추진을 위하여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제17조 (임원의 선임방법) 제3항에 의거 상임이사 선임 동의를 얻고자 함. □ 주요골자 1. 인적사항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성 명</th><th>생년월일 (연령)</th><th>주 소</th><th>최종학 력</th><th>약 력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한 창 구 (韓 昌 求)  </td><td>49. 1. 1 (59세)</td><td>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88 느티 마을 309-803</td><td>연세대 행정대 학원 졸업</td><td>전) 중원구 청장</td></tr> </tbody> </table> 2. 주요 경력사항 ○ 1977.12. 5 ~ : 지방행정주사보 임명(성남시장) ○ 1991. 7. 1 ~ 1991.12.31 : 분당구 사회산업과장(성남시장) ○ 1992.10. 1 ~ :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전출(경기도지사) ○ 1995. 8.10 ~ 1995.10.27 : 성남시 중원구 총무과장 전입(성남시장) ○ 1995.10.27 ~ 1997. 1. 9 : 보건사회국 사회과장(성남시장) ○ 2002. 1. 1 ~ 2002.10.25 : 복지환경국 문화예술과장(안양시장) ○ 2003.10.10 ~ 2005. 6. 3 : 문화복지국장, 행정기획국장(성남시장)	성 명	생년월일 (연령)	주 소	최종학 력	약 력	한 창 구 (韓 昌 求) 	49. 1. 1 (59세)	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88 느티 마을 309-803	연세대 행정대 학원 졸업	전) 중원구 청장	체육청소년과	본 회 의
성 명	생년월일 (연령)	주 소	최종학 력	약 력										
한 창 구 (韓 昌 求) 	49. 1. 1 (59세)	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88 느티 마을 309-803	연세대 행정대 학원 졸업	전) 중원구 청장										

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 관 위원회
		○ 2005. 6. 3 ~ 2006. 3. 3 : 수정구청장(성남시장) ○ 2006. 3. 3 ~ 2006. 7.28 : 분당구청장(성남시장) ○ 2006. 7.28 ~ 2007. 4. 2 : 보건환경국장 (성남시장) ○ 2007. 4. 2 ~ 2008. 2.25 : 중원구청장 (성남시장) 3. 주요 상훈사항 ○ 1983. 7. 1 : 도지사 표창(경기도지사) ○ 1988. 9. 1 : 장관 표창 (내무부장관) ○ 1994. 3. 2 : 도지사 표창(경기도지사) ○ 1998. 9. 1 : 장관 표창(행정자치부장관) ○ 2004. 12. 27 : 대통령 표창(대통령) 4. 외국 시찰 및 수학 사항 ○ 1994. 10. 31 : 지방경제 발전을 위한 해외 연수(영국 등 4개국) ○ 1996. 11. 21 : 사회복지분야 해외연수 (일본 등 3개국) ○ 2002. 4. 27 : 벤치마킹 해외연수(일본) ○ 2004. 8. 16 : 해외체육행정 견학 연수 (홍콩 등 3개국) ○ 2005. 3. 25 : GIS통합구축사업 벤치마킹 (핀란드 등 2개국) ○ 2006. 12. 4 : 그린시티 해외홍보 (독일 등 4개국)		